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 의원 발의】



2020. 8.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5호로 2020년 8월 21일 김화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4)
- 나.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0. 8. 21. ~ 8. 25.)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6조에서 개정된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
 - 안 제9조의4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실정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